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

최 훈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맹주만, 피터 싱어, 동물, 고통, 채식주의

요약문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에서 공리주의와 동물의 고통에 기초해서 채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싱어의 논변을 비판한다. 나는 감응력이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모든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싱어의 주장이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맹 교수의 비판을 검토한다. 그래서 그의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 맹주만 교수는 다소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논문의 취지에 대해 흔쾌히 이해해 주셨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은 필자의 오해를 수정하고 논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은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예전보다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검역 주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안전한 먹을거리가 쟁점이 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움직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채식주의는 모든 고기 또는 일부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을 말한다.¹⁾ 미국에서는 2006년의 조사에서 어류를 포함해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한다고 한다.²⁾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채식주의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의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처럼 국내 철학계에서도 채식 또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맹주만 교수(이하 맹 교수)의 논문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³⁾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불러올 수 있을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피터 싱어는 동물 윤리 문제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맹 교수의 지적처럼 그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물윤리를 개척한 선구적 인물이며, 또한 육식의 비윤리성을 고발하면서 이전의 식습관을 포기하고 몸소 채식을 실행하고 있는 실천적 이론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234쪽) 그런데 맹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싱어의 이론적 토대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채식주의의 종류에 대해서는 최훈(2007), 234-5쪽을 보라.

2) Stahler(2006). 어류와 가금류를 제외한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6.7%이다.

3) 맹주만(2008). 이하 본문에서 괄호 속 쪽수는 맹주만(2008)의 쪽수를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와 동물의 고통에 기초해서 채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싱어의 논변은 ① 고통이 인간과 동물 각각에 대해서 차지하는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②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③ 설사 동물의 고통에 대한 싱어의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총체적인 실천적 지침으로서의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 사례들 각각의 경우의 행동지침으로서의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252쪽, 번호는 내가 붙임.)

맹 교수는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순서대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문제들은 서로 엮여 있으므로 하나의 문제점은 곧 다른 것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맹 교수의 이런 비판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 논문에서 맹 교수의 문제 제기를 ②, ①, ③ 순서대로 검토해 보면서 그의 싱어 비판이 어떤 오해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이 논의가 맹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식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성찰의 이해를 넓히고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싱어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익들에 대한 평등한 고려 원칙’이다. 이것은 “어떤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인간은 개인적이고 파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⁴⁾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도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싱어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4) 싱어(1997), 43쪽. 맹 교수도 이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이 원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한(2007)을 참고하라.

고통을 피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우정과 애정을 즐거이 교환하고, 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이익.⁵⁾

이익들에 대한 평등한 고려 원칙을 인간을 넘어선 존재에까지 적용한다면—이것이 싱어의 목적이기도 하다—이 목록을 동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동물들도 고통을 피하고 어미와 떨어져 지내지 않고 동료와 무리를 이루고 지내며 자연적인 보금자리에서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익은 인간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런 이익은 일찍이 벤담이 한 존재에게 동등한 고려의 권리를 부여하려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⁶⁾ 다시 말해서 이익을 고려한다고 할 때 이익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⁷⁾, 곧 맹 교수의 표현대로 한다면 ‘감응력’(sentience)이다. 예컨대 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자신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도덕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⁸⁾ 그렇지만 감응력을 갖고 있는 어떤 동물들 이상의 존재들은 고통을 피하는 이익과 기본적인 먹고 자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익 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동물부터 그런 감응력이 있느냐는 맹 교수의 논문에서 그리고 이 논문에서 논란거리이다.) 그러므로 감응력은 이익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

5) 싱어(1997), 45쪽.

6) 벤담(1789), 18장, 4절 주석1을 보라.

7) 싱어(1999), 43쪽.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8) 물론 돌을 함부로 다루어서 그 결과로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곧 환경 훼손은 환경 그 자체가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을 갖는 다른 존재들이 환경 훼손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이익은 다양한 이익 중 최소한의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싱어는 감응력을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맹 교수는 “왜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을 고통이나 즐거움의 유무, 즉 감응력이나 의식의 유무에다 그어야 하는가?”(244쪽)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 질문이 그가 싱어는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점인 것 같다. 우리가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을 그을 때 감응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정신 능력의 차원에서 감응력보다 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긋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더 높은 곳, 예를 들어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면, 그것은 벤담이나 싱어가 강조하는 것처럼, 임의적인 것이 된다. 그것이 경계가 된다면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삼아 차별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맹 교수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 질문은 그 기준을 감응력보다 더 낮은 곳에 두면 안 되느냐, 또는 감응력 이외에 감응력보다 낮은 곳에 있는 다른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인 듯하다. 그는 실제로 위 질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싱어가 감응력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는 이익이나 이해관계 이외에도 어떤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속성들은 아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적 대상이나 그것이 갖는 어떤 속성들, 생물학적 복잡성이나 존재론적 복잡성, 생태계와 생물권의 전형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다양성, 부분들의 기능적인 통합성, 조화, 자동조절 체계와 같은 속성들은 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244쪽)

9) 싱어(1999), 45쪽.

10) 싱어(1999), 45쪽.

맹 교수가 언급하는 이런 속성들은 동물들 이외에 식물들 또는 동식물들의 집합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어서 “식물은 정말로 고통을 느낄 수 없는가?”(244쪽)라고 묻고 있다. 맹 교수는 정말로 식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할까? “필자가 보기에 식물 역시 진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이 갖는 기능 및 역할과 유사한 어떤 속성 X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246쪽)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싱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식물은 동물처럼 중앙 집중적으로 조직된 신경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식물에서는 고통을 발견할 수 없다.¹¹⁾ 내가 알기로는 사이비 과학을 제외하고는 식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실증적인 주장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유아들에게 ‘시계가 운다’라고 말할 때처럼 ‘꽃이 아파한다’라고, 데넷(Daniel Dennett)의 용어로 말하면 지향적인 태도를 부여하는 수준일 뿐이다. 맹 교수는 싱어가 은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같은 것들이 “사실적 차원의 고통을 가치적 차원의 의미로 해석하는 순간, 싱어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247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식물의 ‘사실적 차원의 고통’은 실증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맹 교수는 정말로 식물은 고통을 느낀다고 믿는 것일까? 더구나 위 인용문은 식물 개체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읽힌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고통을 느끼거나 쾌락을 느끼는 대상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개체이지 생태계 전체, 종 전체가 아니다. 비유가 아니라면 생태계가 또는 종이 고통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맹 교수의 논문에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한두 군데 더 있다.

11) 싱어(1997), 97쪽.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육식 금지와 채식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육식 금지의 대상인 동물은 도덕적 의미를 갖지만 채식주의의 대상인 식물은 생물학적 의미만을 갖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간극과 불일치는 독립적인 기준을 갖고서 식물에 대한 공정한 고려와 평가의 자세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여겨진다.”(245쪽)

싱어에게서 그런 ‘상당한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고통이 전제되어야만 이익을 갖는다는 것-가 제시되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은 이익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 자체로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정한 고려와 평가의 자세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맹 교수의 비판은 옳지 못하다. 또 맹 교수는 “사폰치스(Steve F. Sapontzis)가 원칙적인 수준에서 식물도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동물해방론자들은 일관성 있게 그 같은 존재의 해방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 지적은 충분히 음미되어야 한다.”(247쪽)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식물도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감응력이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의가 없다. 학자들은 그 점은 인정한 다음에 주로 동물이 정말로 고통을 느끼느냐, 인간의 고통을 기준으로 인간 아닌 동물을 평가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내가 보기에 동물 윤리의 지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논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경계선이라는 점은 문제가 없다. 맹 교수는 “왜 싱어는 다른 것이 아닌 고통 혹은 감응력을 채식 옹호의 길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은 과연 정당한 선택인가?”(245쪽)라고 묻지만,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정당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에 의존하고’ 있다

는 그의 지적은 근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공리주의와 동물의 고통에 기초해서 채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싱어의 논변은 고통이 인간과 동물 각각에 대해서 차지하는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라는 비판으로 넘어가 보자.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과 논변’이라는 비판이 이 부분에서도 관여가 될 것이다.

일단은 맹 교수가 싱어의 주장을 오해한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먼저 그는 “동물의 경험과 인간의 경험 자체를 과연 동등한 비중을 두고서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여전히 정당하게 물을 수 있다.”(246쪽)라고 말한다. 그러나 싱어는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이 대상을 평등한 대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한다.¹²⁾ 다른 상황이 모두 같다면 더 고통이 큰 사람을 적은 사람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의 고통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서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고려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동물보다 훨씬 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암으로 죽는 인간을 암으로 죽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인간 아닌 다른 종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싱어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종들 간의 이익을 비교할 때 주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¹³⁾

다음과 같은 맹 교수의 주장도 살펴보자. “우리가 고통을 싫어한다는

12) 싱어(1997), 46쪽.

13) 싱어(1997), 85쪽. 김성한(2007, 258-260쪽)과 박창길(2008, 230쪽)도 종차별주의자들의 싱어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동물의 고통이 내 아이의 고통보다 훨씬 크더라도 내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동물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은가?”(248쪽) 이런 상황은 아마도 동물실험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싱어도 이 점을 인정할까? 자의식이 없고 대체가능성이 있는 동물이라면 그 동물의 고통이 내 아이의 고통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 동물을 죽일 수도 있다고 볼 것 같다. 그가 “하나 혹은 심지어는 한 다스의 동물이 수천 명의 사람을 가하기 위하여 실험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¹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싱어는 리건(Tom Regan)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다는 분명하게 예측가능한 단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많은 동물실험은 화장품 개발처럼 인간의 건강 또는 생명과 상관이 없거나 동물 실험에 의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게 인간에게 생기는 이익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동물의 고통을 상쇄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¹⁵⁾

14) 싱어(1997), 94쪽.

15) 이 점은 맹 교수도 인정하고 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인간의 필요와 심대한 동물의 복지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우가 성립할 수도 있다.”(249쪽) 한 심사위원은 공리주의자가 주장하는 이익의 예측가능성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익의 예측 또는 계산가능성은 공리주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거리이다. 그러나 필자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확실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동물 실험의 경우 동물에게 오는 고통은 현존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인간에게 오는 이익은 예측할 수 있는 가상의 것일 뿐이다. 그럴 때 동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사위원은 인간의 이익은 “의심이 들더라도 일말의 희망을 위해” 동물의 고통보다 더 고려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필자는 그 ‘일말의 희망’이 어느 정도의 희망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희생되는 동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비교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인간의 이익이라고 해도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에서 침해되는 동물의 이익과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의 이익을 비교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지금 맹 교수가 다루고 있는 육식은 그 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다. 동물을 죽여 인간이 먹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란 혀에 느끼는 ‘입맛’밖에 없기 때문이다. 육식에 의해서 생기는 영양이 보충된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있다고 해도 채식에 의해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그러므로 채식을 논의하는 상황에서는 동물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는 이익이란 아주 사소한 것일 뿐이다.

나는 맹 교수의 논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비교하며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발생적 차원 및 의미론적 차원을 갖는 존재의 범위를 설사 동물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서 적어도 동물 역시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며,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각하는 의식적 경험을 하는 존재로 간주”(250쪽, 강조는 내가 함)한다는 표현이다. 맹 교수가 ‘고통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차원에 대한 해명과 논변’을 언급하면서 주로 의도한 것은 왜 고통을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가, 동물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왜 식물은 배제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런 의문은 그리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고통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동물이 정말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지 묻는 것이 전략적으로 올바르다. 그 과정에서 그의 위 언급은 의미가 있다.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맹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246쪽) 싱어는 동물도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증거로 행동, 신경체계의 특징, 고통의 진화적 유용성을 든다.¹⁶⁾ 이 논변들은 기본적으로 유비 추론이라는 형태를 띤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이 비슷하니까, 또 인간과 동물의 신경체계가 비슷하니까,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동물도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리고 진화론은

로 수많은 고등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
16) 싱어(1999), 47-54쪽을 보라.

그렇게 유사한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고 보는 것이 설명의 간결성을 보인다는 근거에서 유비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유비 추론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논증 방법이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가령 고통을 느끼는 데는 대뇌의 전전두엽 피질과 신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진화의 역사에서 최근에 발전했기 때문에 영장류를 제외하고는 적거나 없다는 주장이 있다.¹⁷⁾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는지, 느낀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종류의 고통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싱어의 논변이 맞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그런 유사점을 찾기 힘든 동물들, 곧 인간과 계통발생학적 측면에서 먼 동물들은 고통이 있다고 보기 힘들게 된다.

어느 정도의 동물이 고통을 느끼느냐는 논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바너(G. Varner)가 제시한 고통의 여섯 가지 조건은 참고할만하다. 그것은 유해수용기의 존재, 중추 신경 계통의 존재, 유해수용기가 중추 신경 계통과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 내인성 아편양제제의 존재, 진통제가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행동 반응이 인간의 반응과 유사한지 여부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포유동물이 이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조류는 세 번째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한다. 그래서 바너는 대체로 척추동물과 (오징어와 낙지 같은 두족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이 고통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¹⁸⁾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조건에 따르면 육식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고통을 느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에 따르면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데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는

17) Nelkin(1986), 137쪽, Bermond(1997), 130쪽을 보라.

18) Varner(1999).

동물은 기계이며 자동인형(automata)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동물 보호론자들에게는 동물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해 준 원흉 정도로 생각된다. 싱어도 데카르트의 철학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강조한 “기독교를 추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기이한, 그리고—동물에게는—가장 고통스런 결과가 담겨져 있었다.”¹⁹⁾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들]은 쾌락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을 칼로 베면 소리를 질러댈 것이다. 또한 그들은 뜨거운 쇠와의 접촉을 피해 달아나려고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시계와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시계보다 복잡하다면 시계는 인간이 만든 기계임에 반해 동물은 신이 만든 훨씬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이다.²⁰⁾

하지만 데카르트가 동물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기계와 같다고 말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를 너무 단순한 사상가로 몰고 가는 것이다. 칼로 베면 소리를 질러대는 동물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비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싱어와 달리 리건은 그런 자비를 보여준다. 그는 데카르트 연구가인 코팅엄(John Cottingham)의 말을 빌려 데카르트는 동물이 배고픔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느낀다고 믿었고, 다만 자신들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말한다.²¹⁾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는 동물들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

19) 싱어(1999), 338쪽.

20) 싱어(1999), 339쪽.

21) Regan(1983), 3쪽.

이다.²²⁾

현대에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지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²³⁾ 동물이 감각하는 것도 의식이라고 부른다면, 동물과 인간의 의식을 구분해 주는 것은 인간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 곧 2차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에 따르면 많은 동물들은 2차 의식이 없기에 고통에 달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 중 카루더스(P. Carruthers)는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정신을 딴 데 쏟으면서 운전하는 행동이나 사물을 인식하지만 시각적인 현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맹시 환자를 그 예로 들고 있다.²⁴⁾ 맹 교수가 말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각하는 의식적 경험을 하는 존재’는 바로 고통을 느낀다고 의식하는, 곧 2차 의식이 있는 존재를 가리킬 것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더 심화된 논의가 이어졌으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 아쉽게도 더 이상의 논의가 없다. 그리고 그가 많은 동물들이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2차 의식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감응력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 그렇지만 지능이나 합리성만큼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리건이나 파인버그(Joel Feinberg) 같은 동물 권리론자들도 2차 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파인버그는 “언젠가는 분석되어야 할 개념인 이익은 적어도 초보적인 인지적 장치를 전제로 한다. 이익은 믿음 또는 인지적 삶을 전제하는 욕구와 목표로부터 어떤 식으로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²⁵⁾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존재는 싱어의 감응력을 만족하는 존재보다 적을 것이다. 감응력은 고통이든 쾌락이든 느끼기만 하면

22) 물론 Regan은 동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3) Nelkin(1986), Tye(2000), Carruthers(1989, 1992)를 보라.

24) Carruthers(1992), 172쪽.

25) Feinberg(1974), 52쪽.

되지만, 리건과 파인버그에 따르면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의식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의식한다는 것은 고통을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져올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동물들에게 이런 2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거리이다.²⁶⁾ 그리고 동물에게 2차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차 의식에 불과한 동물의 고통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을 따라 나오게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²⁷⁾ 가장 결정적으로는 만약 동물에게 2차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 중에서도 그런 2차 의식이 없는 존재—유아, 식물인간 등—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2차 의식을 이유로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주장하는 이들이 동물과 유아나 식물인간을 같은 범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상식을 벗어난 데카르트와 같은 주장은,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물리칠 정도로 단순한 주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상식을 뒤집을 부담은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동물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앞서 말했듯이 약한 유비 논증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무의식적 행동과 비슷하다는 카루더스와 같은 학자의 주장도 역시 관찰에 의한 유비 논증이다. 따라서 그 논증만으로는 상식을 뒤엎기에는 부족하다.

26) 자세한 논의는 Allen(2004)를 보라. Allen은 2차 의식에 의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을 반대한다. Varner(1998, 195쪽)는 미래를 의식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이 없어도 고통의 의식이 만들어지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고통은 강한 부정적 영향력으로 현재의 조직 손상에 대해 치명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유기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미래에 대한 의식은 불필요하다.

27) Carruthers는 Carruthers(2000)에서 비록 의식을 못하더라도 동물의 고통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싱어의 입장이 개별적 사례들 각각의 경우의 행동지침으로서는 무력하다는 맹 교수의 주장을 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테면 고려되어야 할 개체들 전체의 고통과 쾌락의 산정에 있어서 그 범위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와 같이 육식이 일반적인 식습관인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행위 선택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고려가 현재와 미래, 즉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채식보다는 육식을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되어야 할 수도 있다.(252-253쪽)

싱어는 공리주의적 근거에 의해 채식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의 결과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는 채식보다는 육식을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그는 고기밖에 없어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에스키모들에게는 육식을 허용한다.²⁸⁾ 그리고 동물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아무 고통 없이 도살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 동물이 대체가능하다면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한편 앞 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고통의 본질과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동물까지 먹어도 되는지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식의 주 대상인 소나 돼지 그리고 닭에게 사육 과정에서 그리고 도살 과정에서 가해지는 고통은 싱어의 저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동물 운동가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있다.³⁰⁾ 그리고 도살 과정에서

28) 싱어(1997), 89쪽.

29) 동물을 고통 없이 사육하고 도살하는 경우 육식을 허용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Pollan(2002)를 보라. 그리고 대체가능성 논변에 의한 육식의 허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최훈(2007)을 보라.

가해지는 고통이 단순히 무의식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싱어를 비판하는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통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육식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그런 고통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한편 맹 교수의 지적처럼 ‘현재와 같이 육식이 일반적인 식습관인 상황에서’ 육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육식과 관련된 여러 종사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익은 현존하는 동물의 고통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 종사자들이 이직할 때까지 육식금지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채식을 비판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는 마치 노예제를 폐지했을 때 노예 매매 종사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리라는 염려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백번 양보해도 싱어의 주장은 적어도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하는 육식을 반대할 행동적 지침은 분명히 제공해준다.

5

맹 교수도 인용하고 있지만(237쪽), 싱어는 “(…) 이제껏 나는 논파하기 힘든 비판을 접해 보지 못하였으며, 이 책이 기초하고 있는 단순한 윤리적 논거의 견고함을 의심하게 만든 논변은 없었다.”³¹⁾라고 자신의 논변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싱어의 이론이 됐든 다른 학자의 이론이 됐든 동물 해방의 이론적 토대는 매우 튼튼하다. 싱어는 방금 이 말에 이어서 콜린 맥긴(Colin McGinn)이 자신의 『동물해방』에 대해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의 윤리적 골자는 ‘승리한 논의’라고 평가”³²⁾했다고 말한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이론에서는 반박하기 힘들다는 고백일 것이다. 이제 적

30) 싱어(1999), 3장을 보라.

31) 싱어(1999), 22쪽.

32) 싱어(1999), 22쪽.

맹주만 교수는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 최 훈

어도 이론의 측면에서는 싱어를 비판하는 쪽의 대답을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다. 맹 교수의 논문이 거기에 일조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강원대학교)

참고문헌

- 김성한 (2007), “종차별주의 옹호 논변에 대한 대응: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79, 253-274쪽.
- 맹주만 (2008),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22, 231-258.
- 박창길 (2008), “실험동물에게 윤리가 있는지의 여부: 구명선의 논리와 심의 민주주의의 이론을 중심으로,” 『환경철학』 7, 223-251쪽.
- 벤담, 제레미 (1789),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싱어, 피터 (1997), 『실천윤리학 (개정판), 황경식 · 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 싱어, 피터 (1999), 『동물해방』, 김성환 옮김, 인간사랑.
- 최훈 (2007), 『매사에 공평하라: 벤담과 싱어』, 김영사.
- Allen, Colin (2004), “Animal Pain,” *Nous* 38: 617-643.
- Bermond, B. (1997), “The Myth of Animal Suffering,” in *Animal Consciousness and Animal Ethics*, Marcel Dol et al. (eds.), Van Gorcum Publishers, 125-30, 135-6.
- Carruthers, P. (1989), “Brute Experience,” *The Journal of Philosophy*, 86: 258-269.
- Carruthers, P. (1992), *The Animal Iss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uthers, P. (2000), *Phenomenal 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inberg, Joel (1974), “The Rights of Animals and Unborn Generations,” *Philosophy and Environmental Crisis*, ed. William Blackstone, Jr.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43-68.
- Nelkin, Norton (1997), “Pains and Pain Sensa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83(3), 129-148.
- Pollan, Michael (2002), “An Animal's Place,”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0, 2002.

- Regan, Tom (1983),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ahler, Charles (2006), "How Many Adults Are Vegetarian?," *Vegetarian Journal* 2006 Issue 4.
- Tye, M. (2000), *Consciousness, Color and Content*. Cambridge: MIT Press.
- Varner, Gary E. (1998), "Sentientism," in D. Jamieson, ed., *A Compan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Oxford: Blackwell, 192-203.
- Varner, Gary E. (1999), "How Facts Matter: On the Language Condition and the Scope of Pain in the Animal Kingdom," *Pain Forum* 8, 84-86.

Was Professor Maeng Successful in Refuting the Ethical Vegetarianism of Peter Singer?

Hoon Choi

In his “Peter Singer and the Ethical Vegetarianism”, Professor Joo-Man Maeng criticizes the argument of Peter Singer which defends the ethical vegetarianism based on the utilitarianism and sentience as the capacity to feel pleasure or pain. I examine Professor Maeng's criticism focusing on whether sentience can be a moral criterion, whether all animals can feel pain, and whether Singer's argument can be a practical guide. I conclude that his criticism cannot succeed.

Key Words: Joo-Man Maeng, Peter Singer, Animal, Pain, Vegetarianism

최 훈 e-mail: choih@kangwon.ac.kr

투 고 일	2009년 4월 9일
심 사 일	2009년 4월 15일
게재확정	2009년 5월 7일